

생활경영분야

차 례

1. 사업별 예산현황

- 가. 생활자원분야
- 나. 경영유통분야
- 다. 시범사업표찰 제작안

2. 생활자원분야

- 가.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로 농촌교류 확산
- 1) 농촌전통테마마을 사후관리
- 2)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 3) 농촌교육농장 육성
- 4) 농촌체험활동 기술 보급
- 5)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 6) 농촌에듀팜 육성
- 7) 의식주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8) 로컬푸드 교류
- 9) 생활과학기술교육
- 10)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 (어메니티 관광개발)
- 나. 농산물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
- 1)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지원
- 2)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 보급
- 3) 농촌체험용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시범
- 4)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 지원
- 5)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 6)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 7) 농산물 부가가치향상 기술 개발 시범
- 8) 농산물 가공 학습 체험장 운영
- 9) 농촌여성 창업지원 시범
- 10) 지역 향토음식 발굴 육성 사업
- 11)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 (농식품 개발)

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 1)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 2)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 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4)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 시범
- 5)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라.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 1)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2)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
- 3) 아름다운 은빛노후 생활지원
- 4) 생활개선회 육성(정보지 제공)

3. 농업경영 · 정보화 · 도시농업

가.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우수경영모델 확산

- 1)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 2) 농산물 소득조사
- 3)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 4) 경영컨설팅농가 경영개선 지원
- 5) 경영상담실 운영

나.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 정보화능력 향상

- 1)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2)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 3) e-비즈니스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
- 4)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
- 5) 농업인 화상교육 지원
- 6) 사이버농업인정보화 활동지원
- 7) 사이버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

다. 도시민 대상 농업 · 농촌 가치 확산

- 1) 도시 생활농업 지원
- 2) 가정원예 생활화 지원
- 3) 소비자의 방(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 4) 원예치료 프로그램 활동 시범
- 5) 그린-콜 기술지원단 운영

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1)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 이 사업의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생활지도관 최미용, 031-229-5881)입니다

□ 목 적

-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조성
- 농작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모델 확립

□ 추진방향

- 농업인의 주도적 참여와 안전의식 향상으로 농작업 안전보건의 생활화
- 전문가컨설팅 등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 예방 대책 추진
- 사업추진단 운영으로 지도, 연구, 학계,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전문적 지원 확보
- 사업시행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실시와 피드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4조 제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③항 2(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3개소(신규 1개소, 기존 2개소)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3년간 2억원
- 1·3차년도 각 4천만원, 2차년도 1.2억원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시설 및 노지 원예,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리)
 - * 마을내 주작목외의 타 작목 종사 농업인도 사업대상에 포함
- 대상마을 선정기준(선정 심사표 예시 참조)
 - 농작업조건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크며 농작업 유해요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마을
 - 사업참여도 : 참여농업인수가 최소 50명 이상으로 전체 농업인 중 참여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높고 교육, 환경개선, 안전관리 등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
 - 사업기반 : 이장/지도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마을민 조직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등

□ 사업내용

○ 연차별 사업 추진내용

구분	1년차 마을(광주)	2년차 마을(포천)	3년차 마을(남양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단, 마을운영 위원회 구성 ○ 건강, 작업환경·방법,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점검으로 개선방안 도출 ○ 일부 개선방안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및 안전지침 실행 : 교육, 안전관리, 보조도구 보급, 작업 개선, 운동프로그램, 재활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실행 및 사업 성과 평가 ○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 ○ 유형별 농작업 안전 관리모델(안) 도출

○ 연차별 세부 사업내용

구분	세부 사업내용
1년차 마을	<p>○ 시군 사업추진단 구성 운영 : 시군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예) : 센터(작물, 농기계 담당 등), 지역대학, 보건소, 생활체육협의회, 소방서, 농협, 농작업 편이장비 제작업체, 농업인단체, 기타 건강 및 안전관리 지원 가능한 지역내 기관·단체 등 - 활동(예)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각종 교육 및 정보 제공, 순회 진료, 각종 관련 지원 사업 연계, 긴급구호체계구축,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 협조, 운동프로그램 또는 재활요법 실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확대 기반 조성 등
	<p>○ 마을단위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의 역할이 많으므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적정 인원 이상을 확보하고 여성 중심으로 하는 농작업 개선 등을 위하여 여성을 포함하여 구성.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인 3년으로 하고,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될 경우라도 운영위원회 위원직은 유지하여 사업 수행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함.</p>
	<p>○ 농작업 안전관리 핵심리더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지도사, 마을 운영위원 등에 대한 체계적 농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작업 안전관리 핵심인력으로 양성 - 각종 전문교육, 연찬회, 세미나, 평가회 등 지속적 지원
	<p>○ 농작업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제 진단, 분석, 개선안 도출의 일련의 과정을 <u>중앙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단의 각도 지역사업단장 주체로 추진하는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u> 용역으로 종합하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수행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 조정, 마을 운영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중앙·도·시군 사업 추진단(자문단)의 지원 필요 - 문제 진단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단위 : 건강검진, 건강실태조사, 농작업안전 인식조사 등 · 농가단위 : 현장안전보건현황, 개선 요구도, 농작업 유해환경 등 · 각종 조사는 마을 운영위원 및 컨설팅 조사요원이 협력하여 실시하되 농가별 농작업 현장 안전보건 현황 점검은 마을운영위원

구분	세부 사업내용
1년차 마을	<p>주축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관찰 및 설문 실시</p>
	<p>- 농가단위 및 마을단위 개선방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가 및 마을단위 개선활동, 교육, 운동 프로그램, 재활요법 등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도출 시는 센터, 지역사업단장, 운영위원회, 참여농업인 전체, 관련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 도출 · 1차년도 사업초기에 참여형 개선활동 워크숍을 통하여 해당 마을 농작업안전보건 문제점 진단 및 사업 참여 개개인의 개선안 도출
	<p><개선 방안(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및 기초안전 관리 : 농약 안전사용 및 보관, 농기계의 안전운전·주행·정비, 개인 보호장비 사용, 올바른 작업자세, 밀폐공간 안전작업 요령 등 각종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실시. 농작업 안전기록부 작성, 농약 보관함 보급, 농약방제 보호장구 보급, 생활공간의 농약 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 농약방제복 세탁 및 샤워실, 농기계 안전장치 점검 및 수리, 농기계 창고 및 주행로 정리 정돈, 농가주변 및 창고 정리정돈, 작업동선 개선, 작업시간관리 등 -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 : 작업자세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 및 작업대 보급, 중량물 운반 작업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장치 보급, 하우스내 온열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 설치, 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 소규모 선별작업장 설치, 운반이나 작업용 보조도구 활용을 위한 고랑폭 확보 등 - 농작업 관련 건강 개선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교육, 운동 프로그램, 재활요법 등 시행, 소규모 휴식시설 설치, 피로회복 기구 보급 등 <p>○ 개선방안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업단장, 농업기술센터, 마을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1차 년도에는 안전보건교육, 안전기록부 작성, 농기계의 안전 점검, 농기계 창고 및 주행로 정리 정돈, 농가 및 창고 정리 정돈,

구분	세부 사업내용
1년차 마을	<p>농약 안전 보관 및 사용, 작업동선 개선, 작업시간관리 등을 기본적인 안전관리 중심으로 개선방안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용 농작업 안전기록부 1부는 운영위원장이 작성하고 농가용 안전기록부는 마을 대표 농가 5호 이상 기록(중앙 제작 배부) - 마을 주작목의 농업기술 담당자, 병해충종합관리(IPM) 담당자 등의 협력을 유치하여 농작업 개선을 위하여 최신 농업기술과 농약 적정 사용 등의 기술적 지원도 병행 실시 - 농기계부서와 협력하여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 및 순회 수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원 - 생활체육협의회, 보건(진료)소, 소방서 등의 협력을 유치하여 생활 체육, 운동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금연, 절주, 소방안전, 응급상황 대처법, 농로 및 전기 안전 점검 등 지원 확보
2년차 · 3년차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단 및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 1차년도 마을과 동일 ○ 농작업 안전관리 핵심인력 양성: 1차년도 마을과 동일 ○ 개선방안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도출된 개선방안 및 당해연도 사업 추진 중 추가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실행 -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집행방법 : 1차년도 마을과 동일 ○ 평가 및 사업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에 안전보건 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전년도 현황과 비교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사항 피드백 - 3차년도 마을의 경우 3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평가 실시 : 세부내용 추후 송부 - 사업 후 타지역에서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 방법 공유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 도 농업기술원 : 생활경영과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촌자원사업 관련 팀·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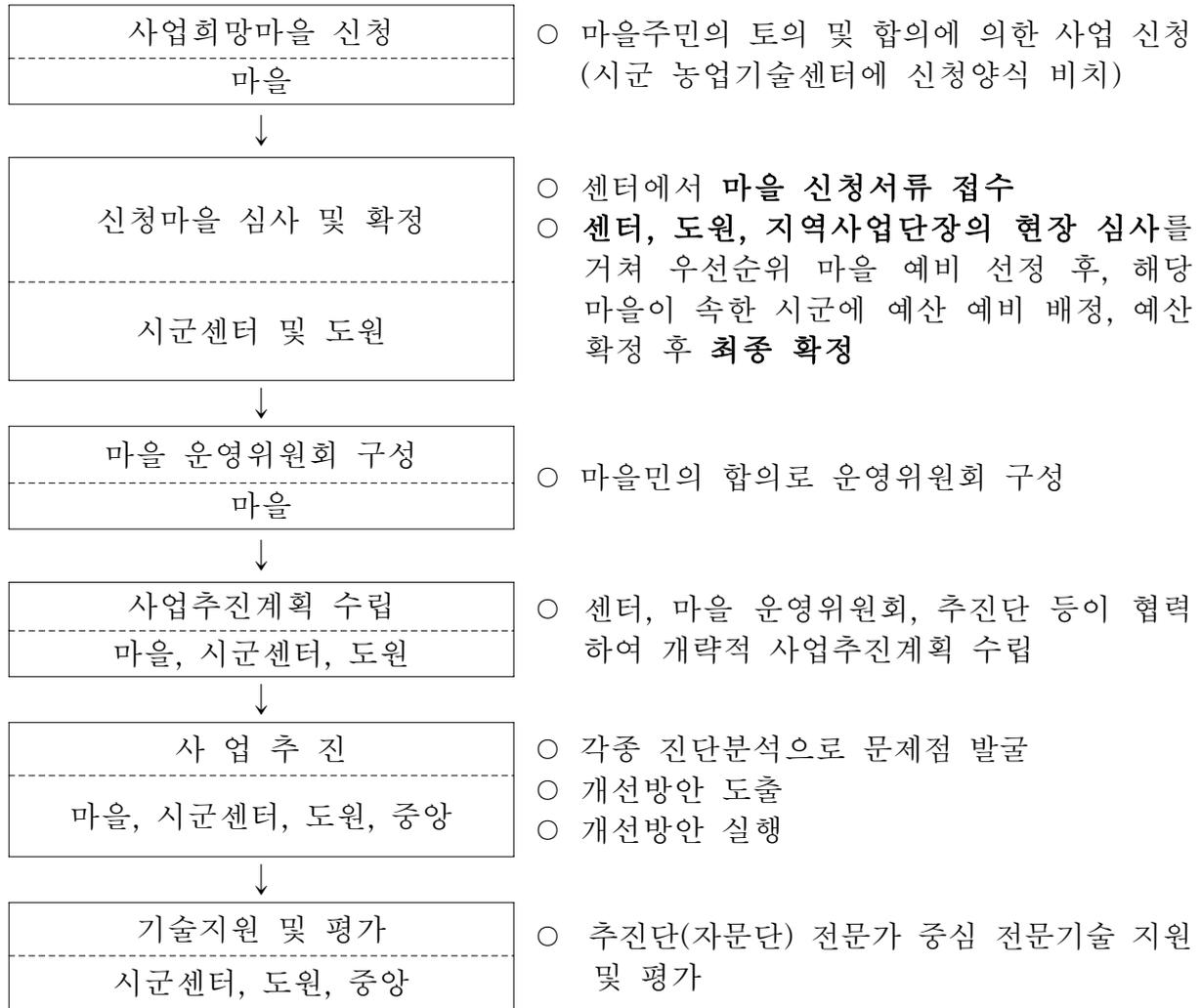
○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 농촌진흥청 및 중앙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단 : 사업기획 및 예산, 전문교육, 홍보, 평가, 지역지원 등
- 도 농업기술원 및 도 자문단(추진단) : 마을 선정, 도내 안전사업 추진 종합지원, 홍보 등
- ※ 농작업 안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작물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마을 선정 심사에 지역 추진 단장이 참여하도록 함.
- 시군 센터, 지역사업단장, 시군 자문단(추진단) : 사업 주관, 진단, 마을 사업실행 지원, 농업인교육, 홍보, 평가 등
- 사업마을 및 운영위원회 : 진단 및 계획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안전관리 생활화 등

○ 사업시행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변경 확정 후 변경사항을 상위기관에 즉시 제출
- 사업비 집행
 - 농업기술센터 집행 사업비(경상사업비, 용역비 등)와 마을 사업비(민간보조사업비)를 시군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은 변경 불가<참고 1>
 - 민간보조사업비는 보조금지규정에 의해 마을 사업 운영위원장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 지도 점검

○ 마을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 행정사항

- 2010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선정 결과 보고(제1호서식) : 3. 20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제2호서식) : 3. 20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제3호서식) : 11. 30

※ 참고 : 1. 개소당 사업예산 집행 예시

2. 농작업 위험요인 및 관련 건강장해

3.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신청서

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대상선정 심사표 예시

<참고 1>

개소당 사업예산 집행 예시

구분		세 부 내 용	사업비 집행액(백만원)		
			1차년도 (‘10선정 마을)	2차년도 (‘09선정 마을)	3차년도 (‘08선정 마을)
농기술 센터 또는 마을	교육 및 운영	○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농작업성 질환(근골격계 질환 등) 관리 및 예방 운동프로그램, 재활요법 등 ○ 선진지 견학 ○ 외부 교육 참석 보상 ○ 운영위원 조사수당 ○ 시군단위 사업추진단 운영 ○ 농작업 안전 교재, 화판 등	6	14	12
	현황 진단 관리	○ 농업인 직업성 질환 검진	10	-	-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14	6	8
소계			30	20	20
마을	기초 안전	○ 농약 보관함, 농약방제보호구, 농기 계의 안전장치 등	8	4	2
	건강 관리	○ 소규모 공동 휴식시설, 피로회복기구	-	90	16
	농작업 개선	○ 농작업 보조장비 보급 ○ 농작업 환경 및 시설 개선			
	교육 및 운영	○ 교육 기자재, 게시판, 안내판 등	2	6	2
	소계			10	100
총계			40	120	40

* 시군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단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비용은 변경 불가

※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용역 추진절차 및 방법

- 추진주체 : 중앙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단의 각도 지역사업단장
- 용역 계약서 작성 : 센터와 지역사업단장 소속 대학(병원)
 - 단 건강검진의 경우 지역단장 소속 대학(또는 병원)의 여건상 검진이 불가능하면 지역단장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관과 계약하여 검진을 실시하되 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 처방, 상담, 개선안 제안 등은 지역단장이 실시
 - 전체 컨설팅 금액은 중앙 추진단에서 세부내역 산출 후 제시
 -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참여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단가와 검진 참여예정자 수를 기초로 계약하고 실제 검진 수행 후 정산 처리. 근골격계 질환 진단 방사선 검사는 지역단장, 센터,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세부 내용, 추진절차 및 일정 : 추후 세부 계획 제시

※ 사업비 집행 참고 사항

-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별 농가에 보급하는 편이장비나 시설은 농가당 지원액이 **50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고 시군 여건에 따라 농업인 자부담비율을 정하여 보급하되 지원액이 클수록 농가 자부담 비율 상향 조정
 - * 예 : 100만원 미만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5% 등
-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반농기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농작물 관리, 수확, 운반, 선별, 포장, 농약살포 등의 인력 농작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는 편이장비 및 시설(소형동력운반차, 부착기 포함)이 대상임
- 농작업간 휴식을 위한 공동 휴식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찜질방 등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소규모 휴식시설에 한함
- 마을내 사업대상 작목이 다양할 경우 교육, 운동프로그램 등 전 작목에 적용 가능한 것은 다른 작목도 포함하여 추진하되 농작업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나 시설 지원은 주작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타 작목은 지역사업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 마을운영위원회의 협의 하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농작업 보조도구 및 장비 등은 사업 참여 농업인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하여 보관, 관리, 활용 신청, 배정 등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여 규정을 만든 후 활용하도록 조치. 보관 장소 사전 확보 필수
- 개선방안 도출에 따른 사업비 집행 시 사업 참여 농업인 개개인의 요구도와 마을 공동 요구도를 수렴한 뒤 참여 농업인 및 마을 전체의 농작업 안전보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농업인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식, 농작업 안전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마을 숙원 사업에 지출하는 등은 지양하여야 함.

<참고 2>

농작업 위험요인 및 관련 건강장해

분 류	세분류	세세분류	위 험 요 인	건 강 장 해
원 예	시설원예	채소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응애 및 진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 (각종 급성중후군, 만성신경영향, 면역기능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반복동작으로 근골격계질환 (요통,관절염,근막통증후군 등) ○ 유기성먼지에 포함된 알레르기원(응애류, 버섯 포자,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성 호흡기질환 ○ 밀폐 및 고온다습 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혈압상승, 호흡곤란 등
		화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응애 및 진드기, 꽃가루	
		버섯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포자	
	노지원예	노지채소 (고추 등)	농약, 부자연스런 작업자세와 반복동작, 중량물, 자외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각종 급성중후군, 만성신경영향, 면역기능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골격계질환(요통,관절염,근막통증후군 등) ○ 뜨거운 햇볕(자외선)에 의한 열사병, 피부질환 등
		과수	농약, 부자연스런 자세와 반복동작, 무거운 물체	
	수 도			농약, 부자연스런 자세와 반복동작, 곡물먼지, 기타 찌르가무시 등 동물매개감염병
축 산			유기성먼지, 유해가스(암모니아 등), 밀폐환경, 스트레스, 미생물(곰팡이,세균,바이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성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등), 엔도톡신에 의한 패혈증 ○ 고농도 암모니아 가스 중독 ○ 인수공통전염병 (조류독감 등) ○ 동물매개감염병 (유행성출혈열,뇌염)

<참고 3>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마을명 :

가구 및 인구수

총가구수(호)		참여희망 가구수(호)		참여 희망 농업인수(명)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소계	55세 미만	55~ 65세 미만	65세 이상	소계	55세 미만	55~ 65세 미만	65세 이상	

* 농업인수는 농가 인구수가 아니고 실제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임

2. 작목별 농사 현황

○ 사업대상 주작목 : (2~3개 기록)

구분	주요작목	총규모(ha)	해당 농가수	농업인수	주된 농사기간
밭농사(노지)					
밭농사(시설)					
논농사					
과수					
축산					
기타					

3. 사업대상 주작목 농가 중 농사규모 상위 5개 농가 현황

번호	성명	주요작목	농사규모	전화번호
1				
2				
3				
4				
5				

4. 농기계 보유 현황

종 류	보유 농가수	보유 대수	주 사용 시기(0월 초, 중, 하)
경 운 기			
트 랙 터			
이 앙 기			
콤 바 인			
로터리(관리기)			
예 초 기			

5. 농작업 재해 현황(최근 2년간, 2008. 1 ~ 2009. 12)

* 농약중독, 농기계 사고, 넘어짐, 부딪힘, 동물피해 등으로 인해 1일 이상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거나 혹은 병원, 약국 등에서 치료한 사례는 모두 기록

순번	성명	연락처	사고 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예	홍길동	031-333-2244	'00년. 5월경	논두렁 이동 중 발목을 접질러서 오른쪽 발목을 뺨	3일 정도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
예				예초기로 제초작업 중 돌이 정강이에 튀어 상처를 입음	3일간 병원 치료
1					
2					
3					
4					
5					
6					
7					
8					
9					
10					

6. 농작업 유해요인 현황

구 분	유해 요인 현황	기간 (0월~0월)	참여 희망 농가 중 해당 농가수(호)
1순위			
2순위			
3순위			

- * 유해요인현황(란)은 마을의 농작업 중 가장 심각한 유해요인을 있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 (예시 : 버섯 하우스내 밀폐환경, 고온다습, 분진)
- * 기간(란)은 유해요인이 1년 중 적용되는 월을 대략적으로 기록
- * 해당농가수(란)은 유해요인이 적용되는 농가수를 기록
- * 유해요인 예시 : 근골격계위험요인(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반복 동작, 정적인 작업자세, 중량물 인력운반), 하우스내 밀폐환경, 하우스내 고온다습한 환경, 농약 노출, 소음, 진동, 분진 등

7. 마을 단체 활동 현황(작목반 등)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의 주요 활동

※ 붙임 : 참여 희망 농업인 명단 1부.

우리 마을은 마을주민 총회에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주소 : (전화:)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시(군) 농업 기술 센터 소장 귀하

<참고 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대상선정 심사표(예시)

□ 마을명 :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농작업조건 (30점)	농작업 유해요인의 상대적 심각성(10점)	상	10	도내 신청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단장이 평가(각 1/3)	
		중	6		
		하	3		
	농작업 유해요인의 해당기간 (10점)	24개월 이상	10		3순위까지의 유해요인별 해당 기간(개월)을 합산
		16~24개월 미만	6		
		16개월 미만	3		
농작업 유해요인 해당 농가수 (10점)	150호이상	10	3순위까지 유해요인별 해당농가수를 합산		
	100~149호	6			
	99호 이하	3			
사업참여도 (30점)	참여희망농업인수 (15점)	100명 이상	15		
		80명 ~99명	10		
		80명 이하	5		
	참여희망 농업인 중 55세 미만 인원수 (15점)	20명 이상	15		
		10명 ~19명	10		
		10명 미만	5		
사업기반 (30점)	이장/지도자의 지도력 (10점)	우수	10	현장 심사시 참여 희망 농업인 이 모이도록 하 고 사업계획 설 명과 토론, 참여 의향 정취, 면접 을 통하여 지역 단장 및 도담당 (심사자)가 판단	
		보통	6		
		미흡	3		
	마을민 화합도 및 조직활동 활성화도 (10점)	우수	10		
		보통	6		
		미흡	3		
	사업 지도인력 현황 (10점)	우수	10		
		보통	6		
		미흡	3		
종합적 적합성(10점) (또는 지역에서 필요한 항목)		우수	10	지역단장 및 도 담당 판단	
		보통	6		
		미흡	3		
합 계			100		
종합의견					

※ 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조정 가능

심사일 : 200 년 월 일

심사자 : ○○농업기술센터(담당자) 성명 (서명)
 ○○농업기술원(도담당자) 성명 (서명)
 ○○추진단장(도추진단) 성명 (서명)

[제1호서식]

2010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선정 결과(3. 10)

1. 일반현황

마을명 :

가구 및 인구수

총가구수(호)		참여희망 가구수(호)		참여 희망 농업인수(명)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소계	55세 미만	55~ 65세 미만	65세 이상	소계	55세 미만	55~ 65세 미만	65세 이상	

* 농업인수는 농가 인구수가 아니고 실제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임

2. 작목별 농사 현황

○ 사업대상 주작목(2~3개 기록)

구분	주요작목	총규모(ha)	해당 농가수	농업인수	주된 농사기간
밭농사(노지)					
밭농사(시설)					
논농사					
과수					
축산					
기타					

3. 사업대상 주작목 농가 중 농사규모 상위 5개 농가 현황

번호	성명	주요작목	농사규모	전화번호
1				
2				
3				
4				
5				

4. 농기계 보유 현황

종 류	보유 농가수	보유 대수	주 사용 시기(0월 초, 중, 하)
경 운 기			
트 랙 터			
이 앙 기			
콤 바 인			
로터리(관리기)			
예 초 기			

5. 농작업 재해 현황(최근 2년간, 2008. 1 ~ 2009. 12)

순번	성명	연락처	사고 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1					
2					
3					
4					
5					
6					
7					
8					
9					
10					

9. 사업참여자 명단

개인 일련 번호	농업인 성명	농가 일련 번호	농가 세대주 명	세대주 와의 관계	실제 나이 (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번지)	작목
1	김말식	1	김말식	본인	50	000000- 0000000	321-1230	신대리 3	사과, 고추
2	이영자	1	김말식	부인	45	000000- 0000000	321-1230	신대리 3	사과, 고추
3	박영호	2	박영호	본인	65	000000- 0000000	321-3456	신대리 4	사과
4	박신영	2	박영호	아들	38	000000- 0000000	321-3456	신대리 4	사과

※ 이 명단은 각종 조사, 진단과 개선활동 지원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활용될 것이므로 희망하는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마을 농업인에게 조사나 교육, 운동프로그램 참여, 개선활동 실천 등 의무 사항을 널리 홍보한 후 참여 희망 농업인의 개별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참여 희망자 명단을 작성 제출

[제2호서식]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계획(2·3년차 마을) : 3. 10

○ 마을명 :

구 분		추진내용	예산(천원)	비고
사업운영				
현황진단관리				
개선 방안 실행	농작업 안전 의식 향상 및 기초안전관리			
	농작업 관련 건강 개선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개선			
	기타			
계				

[제3호서식]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실적(신규, 기존마을) : 11.20

1. 일반현황

지역	마을명	주작목	총가구수 (호)			사업참여 농가(호)			사업 참여 농업인(명)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도											
계											

2. 사업추진현황

가. 마을 운영위원회 및 시군 사업추진단 활동

지역	마을명	위원수 (명)	활동실적		주요내용	비고
			회의횟수 (회)	참여인원 (명)		
도	1년차					
		소계				
	2년차					
		소계				
	3년차					
		소계				
계						

나. 현황진단관리(컨설팅)

농작업 현장 안전보건 점검(신규,기존)

지역	마을명	참여인원(명)	추정일	비고
도				
계				

건강수준 측정(신규)

건강검진

지역	마을명	참여인원 (명)	추정일	단가 (원)	내용
도					○ 기본 : 항목 ○ 추가 : 항목 - -
계					

* 기존마을 중 추가로 추진한 경우 작성

건강조사

지역	마을명	건강실태조사		근골격계질환 검진		비고
		인원(명)	시기	인원(명)	시기	
도						
계						

컨설팅 실적(신규,기존)

지역	마을명	계		교육		상담		기타		주요내용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도										
계										

다. 농작업 유해요인 진단관리(신규)

지역	마을명	진단시기	작목명	주요내용
도		월 일 ~ 월 일		
계				

라.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 현황

마을별 건강수준(신규마을)

지역	구 분	조사결과(간단히)	
		건강실태조사	근골격계질환 검진
도	마을 명	0	0

마을별 농작업 유해요인 및 개선방향(신규마을)

지역	마을명	주된 문제점	개선방향
도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 현황

○ 마을 명 :

구 분	추진내용	개선방안 (년~년)			2010년 실행실적	
		계획 연도	공동 (단위)	개별 (단위)	공동 (단위)	개별 (단위)
농작업 안전 의식 향상 및 기초안전 관리	농약방제복 착용	2010		50개		50개
	농약보관함	2010		50개		50개
소계	총 대					
농작업 관련 건강 개선	벨트 맞사지기	2011	2조	2조		
	혈압기	2011	2조	2조		
소계	총 대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개선	선별 작업대 설치	2011	5대			
소계	총					
기타	화판제작	2011	10조			
소계	총 대					
총계						

□ 교육 및 회의 실적

지역	마을명	기초안전		건강증진		회의,견학		주요내용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횟수 (회)	인원 (명)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안전교육 : 농약안전, 안전보건교육, 참여형개선활동, 농기계 안전 등 - 건강증진 : 근골격계질환예방, 웃음치료, 식생활 교육 등 * 회의,견학 :운영위원회의 제외
	계							

3. 농작업 재해 현황(신규·기존마을, 2010. 1 ~ 11월)

순번	성명	연락처	사고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1					
2					
3					
4					
5					
-					

4. 사업비 집행 실적

○ 총괄

(단위 : 백만원)

지역	마을명	총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 타
도						

○ 사업비 집행 세부실적

구 분	추진내용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사업운영					
	소 계				
현황 진단관리					
	소 계				
농작업 안전 의식 향상 및 기초안전 관리					
	소 계				
농작업 관련 건강 개선					
	소 계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개선					
	소 계				
기타					
	소 계				
계					

5. 홍보실적

지역	마을명	홍보				교재
		계	TV·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도		회	회	회	회	총부
계						

6.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7.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8. 관련사진

※ 첨부 : 마을별 실적

2)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 이 사업의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생활지도관 최미용, 031-229-5881)입니다

□ 목 적

- 농약 안전관리 및 작업개선으로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조성
-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 공간 조성

□ 추진방향

- 농약살포 또는 취급 시 보호구 착용으로 농약노출을 최소화하여 농약중독 예방
- 농약은 농약전용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폐 농약, 농약 빈병은 안전하게 처리
- 농작업 부담이 많은 농약살포 작업을 개선하여 농약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고 작업능률 향상
-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및 안전관리 교육 강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4조 제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③항 2(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개소(고양)
- 사업비 : 30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대상 및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농약노출 및 유해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농촌 마을
- 대상마을 선정기준
 - 농작업 환경이 농약노출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마을
 - 농작업 부담이 많은 농약살포 작업으로 개선이 필요한 마을
 - 사업농가 : 참여농가가 최소 20농가 이상으로 전체 농업인 중 참여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높고 교육, 환경개선, 안전관리 등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
 - 사업기반 : 이장/지도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마을민 조직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등

□ 사업내용

- 농작업 특성과 농작업자를 고려한 농약 보호구 지원
- 농약 살포작업 개선을 위한 보조구 및 시설 지원
- 농약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농약 보관함, 농약 빈병 수거함 등 보급
- 농약 안전사용 및 안전관리 교육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 도 농업기술원 : 생활경영과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촌자원사업 관련 팀·담당
-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 농촌진흥청 : 사업기획 및 예산, 전문교육, 홍보, 평가, 지역지원 등
 - 도 농업기술원 : 사업계획 검토, 사업점검 및 지도, 평가
 - 시군 센터 : 사업 주관, 마을 사업실행 지원,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사후관리, 농업인교육, 홍보, 평가 등

□ 행정사항

-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제1호서식) : 3. 10
-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제2호서식) : 11. 20

[제1호 서식]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 추진 계획(3. 10)

1. 일반현황

사업마을 및 대표자 현황

도	마을명	주작목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구 및 인구

도	마을명	총가구수 (호)		참 여 농가수 (호)	참여 희망 농업인수(명)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소계	55세 미만	55~ 65세 미만	65세 이상	소계	55세 미만	55~ 65세 미만	65세 이상			

* 사업대상은 농업인으로 한정

2. 농기계 보유 현황

종 류	보유 농가수	보유 대수	비 고
경 운 기			
트 랙 터			
이 앙 기			
콤 바 인			
로터리(관리기)			
예 초 기			

3. 농작업 재해 현황(최근 2년간, 2008. 1 ~ 2009. 12)

순번	성명	연락처	사고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4. 마을 단체 활동 현황(작목반 등)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의 주요 활동

5.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 농사 작목

6. 사업참여자 명단

NO	농업인 성명	농가 세대주명	세대주와 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번지)	작목
1	김말식	김말식	본인	000000-00000000	321-1230	신대리 3	사과, 고추
2	이영자	김말식	부인	000000-00000000	321-1230	신대리 3	사과, 고추
3	박영호	박영호	본인	000000-00000000	321-3456	신대리 4	사과
4	박신영	박영호	아들	000000-00000000	321-3456	신대리 4	사과

* 이 명단은 각종 조사, 진단, 평가 등에 활용 예정임.

※ 첨부 : 마을별 실적

[제2호서식]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 추진실적(11. 20)

1. 일반현황

지역	마을명	주작목	총가구수(호)			사업참여 농가(호)	사업 참여 농업인(명)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도									
계									

2. 사업추진실적

가. 마을 운영위원회 활동

지역	마을명	위원수(명)	운영실적		주요내용
			횟수(회)	인원(명)	
도					
계					

나. 교육 및 회의

농약안전관리 교육

지역	구 분	교육실적		주요내용
		횟수(회)	인원(명)	
도	마을명			
계				

농작업 안전교육 및 회의

지역	마을명	농작업안전교육		회의, 견학		기타		주요내용
		횟수(회)	인원(명)	횟수(회)	인원(명)	횟수(회)	인원(명)	
도								
계								

* 농작업 안전 교육 실적 : 농약안전관리 이외의 농작업 안전 교육

다. 농약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 농약안전관리

지역	마을명	농약보관함 (개)	농약빈병 수거함(개)	폐농약 수거함	비고
도					
계					

* 농약보관함(잠금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 농약 전용 보호구 보급 실적

지역	마을명	수 량(벌, 개)							비 고
		계	농 약 방 제 복	고글	마스크	장갑	신발	기타	
도									기타 :
	계								

□ 농약 살포작업 및 작업환경 개선

지역	마을명	장비·시설명	수량(개,조)	비 고
도				
	계			

3. 농작업 재해 현황(2010. 1 ~ 11월)

순번	성명	연락처	사고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1					
2					
3					
4					
5					
-					

4. 사업비 집행 실적

○ 총괄

(단위 : 백만원)

지역	마을명	총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도						
계						

○ 사업비 집행 세부실적

마을명	구분	추진내용	회/명 종/개	금액 (천원)	비고
	회의 및 교육				
	농약전용보관함				
	농약전용보호구				
	농약작업환경개선				
	기타				
계					

5. 홍보 및 교재

지역	마을명	홍보				교재
		계	TV·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도		회	회	회	회	종부
계						

6.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7.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8. 관련사진

※ 첨부 : 마을별 실적

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이 사업의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생활지도관 최미용, 031-229-5881)입니다

□ 목 적

-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
- 고령 및 여성 농업인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 조성

□ 추진방향

- 농업인의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의 편이화, 선진화 도모
- 기계화되기 어렵고 장시간의 농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편이장비의 보급 확산
- 특정한 신체 부위의 장시간 반복 작업, 불편한 작업자세, 과중한 중량물 취급과 운반 등으로 인한 인간공학적 농작업 환경 개선
- 인체공학상의 안전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농가에 보급 가능한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 체제 마련 및 운영
-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편이장비의 발굴 및 개발, 보급 확산 기반 조성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제17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산업간 안전 불균형 해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 주민의 복지증진)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 용어 정의

- 『농작업』이라 함은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등에 관련되어 농업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
- 『편이장비』라 함은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생물학·화학적 문제점의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장비로서 소형 엔진 및 전동식(충전식 배터리) 장비 등을 포함함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이화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
-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위원회』(이하 편이장비위원회라고 칭함)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매년 보급 가능한 편이장비의 개발 및 보완, 목록 선정은 물론, 사업 평가,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말함
 - 편이장비위원회는 인간공학, 산업공학, 안전공학, 농기계학 등 농작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부정기적으로 협의회, 교육 및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함.
-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원회라고 칭함)는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 또는 마을 단위에 구성하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운영 및 집행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함
 - 사업추진위원회는 이장, 회장, 지도자 중 합의된 농업인 대표와 사업 참여 농업인중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마을 또는 ○○(단체명)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추진위원회’라고 칭함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10개(용인,평택,화성,이천,파주,광주,안성,여주,양주,가평)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대상 : 마을(리) 단위, 농업인 단체
- 선정기준(선정심사표 예시 참조)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 효과가 큰 단체 또는 마을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체 또는 마을
 - 사업 참여 농업인수가 10~20명 내외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 또는 마을
 - 회장, 이장, 지도자 등 대표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참여 마을 및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단체 또는 마을
 - 사업대상은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마을을 선정

□ 사업내용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및 보급
 -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농작업장 위험 요소와 원인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효율성, 품질의 개선 효과가 큰 편이장비
- 지역에서 시급히 보완, 개발이 필요한 장비 보급
 -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작업 및 과도한 힘 사용 개선 등을 위한 편이장비
- 보급한 편이장비의 운영과 평가, 분석 및 관리 등

□ 사업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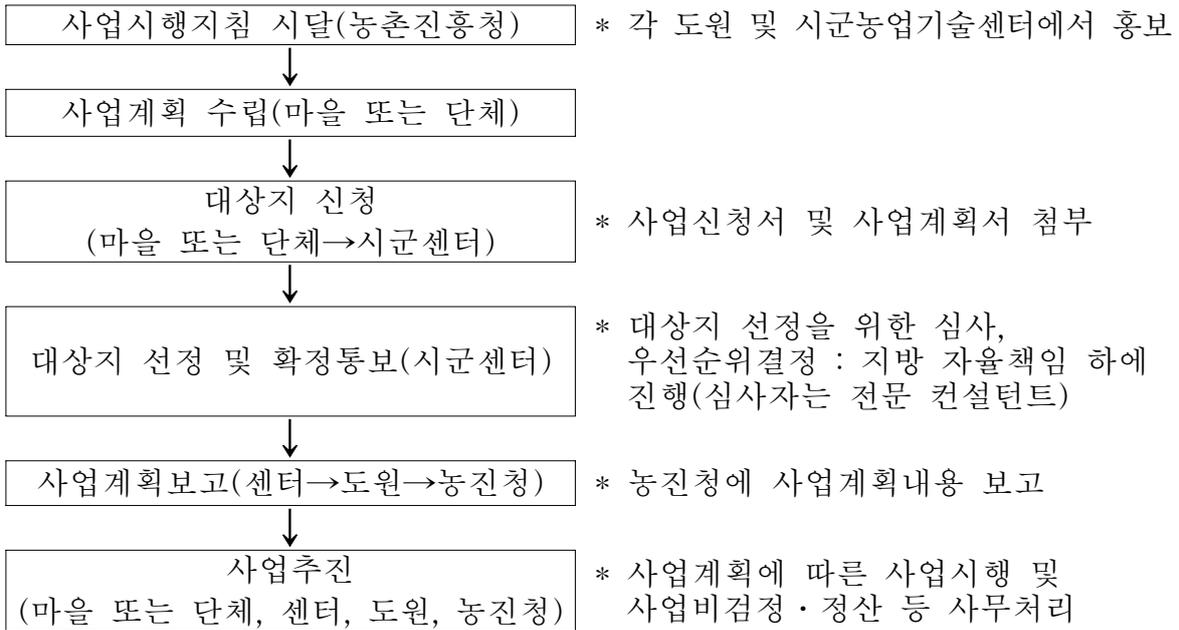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이장, 회장, 지도자 중 합의된 대표와 농업인 등 적정 필요인원을 조정하되 10명 내외로 구성

- 사업계획의 협의, 사업기반 조성, 운영관리 등 사업 총괄
- 해당 농작업의 실태 및 작업환경 파악, 중점 보급 장비로 선정된 편이장비의 보급 및 관리와 운영, 개선아이디어 수집 등
-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에 의해 선정된 편이장비를 중심으로 보급하되, 해당 전문가의 인간공학적 메커니즘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기존의 장비를 적합하게 수정보완하거나 개발한 편이장비를 중점 보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 지원되는 편이장비는 운영 및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실행
- 사업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편이장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업 여건 및 필요 장비의 선정, 평가, 성과 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 실시
 - 통합컨설팅 세부추진방법 및 조사 양식, 컨설팅전문가 명단 등은 추후 송부
- 사업 시행 단체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편이장비의 지역 적합성 및 보완사항 등 검토 후에 현장 적용
- 사용 전·후의 작업자세, 안전성, 생산성, 경제성, 만족도 등 효과 평가 및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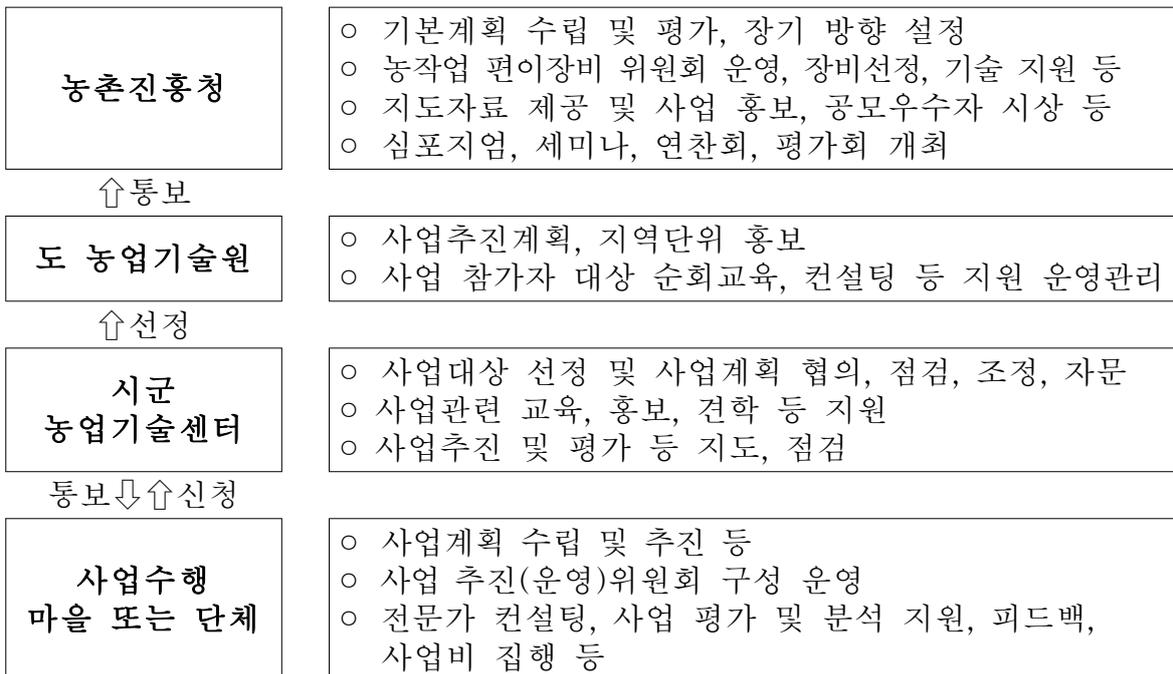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경영과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자원 업무 관련 팀·담당

○ 사업추진절차 개요



○ 사업주체별 역할 분담



○ 사업대상의 변경

- 사업대상 단체 또는 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변경, 확정된 후 변경내용을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비 집행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 단체 또는 마을 대표에게 지원된 사업비를 시군 여건에 따라 편성, 관리(사업비 집행 예시 참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 집행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 농작업 여건 조사 및 분석 등												
○ 편이장비 조사, 선정, 보완 개발, 분석 및 보급												
○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 사후관리 및 성과측정

- 지원한 편이장비는 마을 및 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대표가 총괄 관리하되, 파손 및 고장, 망실 등에 대한 이용규칙을 마련하여 운영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3년간 사후관리 및 활용도를 점검하여 성과 및 보완사항을 피드백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금을 집행하고, 타용도로 이용 시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효과에 대한 조사(매년 10~12월 사이)
 -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 결과 활용 : 컨설팅 5단계별 조사표 측정결과

□ 사업평가 및 환류

- 성과측정결과를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사업지역별로 사용효과, 능률 향상도 등 조사 및 분석
- 우수 농작업 편이장비 공모 및 사업 시상으로 인간공학적으로 기능이 개선된 농작업 편이장비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체계적인 사업 확산 계기 조성

□ 2011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의 보급 효과를 높이고 확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의 주소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 2010년 지원대상 및 조건과 동일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개발된 편이장비 구입

○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년
- 지원금액 : 개소 당 50백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 정도)
* 지원금액과 비율은 지방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함

○ 사업신청절차

- 사업신청(마을 또는 단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제1호, 제2호 서식)
- 대상지 추천 및 선정
 -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지를 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선정
 - 심사표(예시) 참고
- 예산신청(시도지사→농촌진흥청(검토)→기획재정부)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협의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관리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 사업추진 능력을 구축토록 함

○ 기타사항

- 기본 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선정 심사표[예시]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계획 보고(제3호 서식) : 3. 30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추진결과보고(제4호 서식) : 11. 30

<참고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국비예산 활용(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율
사업운영 및 평가	○ 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일체 운영(사업기반조성, 관리운영 등)	0~5% 미만
	○ 농작업 여건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10%
장비 선정 및 보급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개발된 편이장비 구입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구입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에 의해 선정된 장비를 인간공학적으로 수정보완하거나 최적 작업 방법을 도출하고 표준화 되도록 개선하여 보급)	50~90% 내외
	○ 지역별, 작목별 농작업 여건에 필요한 편이장비 구입 (지역에서 시급히 요구되어 필요한 장비 보급)	0~30% 내외
합 계		100% (50백만원)

* 사업운영 및 평가 사업비 : 농업기술센터로 편성(연구개발비 10%, 수용비, 운영수당, 강사료, 보상금, 임차료 등)하거나 사업대상 단체 또는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의 조정

[제1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신청서

1. 마을(단체)명 :

2. 가구 및 인구수(마을 또는 단체 중 선택)

(마을)

가구수(호)			성별 농업인수(명)			연령별 농업인수(명)				사업 참여 희망농업인수 (명)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단체)

성별 회원수(명)			연령별 회원수(명)				사업 참여 희망회원수 (명)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3. 농작업현황

대상 주작목	작업상의 문제점	해당농가 (회원) 수	비고

4. 마을(단체) 활동 현황(정부 지원사업,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의 주요 활동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단체)에서 0000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전화:)

성명 :

(서명 또는 인)

00 시(군) 농업 기술 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계획서

1. 마을(단체) 일반현황

- 마을(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위치, 가구 및 인구(회원)수, 사업 참여 농업인(회원)수, 주요 농특산물(우선순위), 농가(단체)소득(평균, 연간) 등

2. 농작업 현황

- 영농현황(영농형태별 면적, 규모 등)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보유시설, 장비 등)
- 농작업의 문제점 등 여건 : 개선이 필요한 작업 등

3.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필요성·목표
 - 현재 작업상의 문제점 및 노동부담, 개선 필요성 등 설명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계획
 - 대표 및 추진위원의 약력 및 활동경력, 연락처 등
- 사업추진계획
 - 농작업 환경 개선작업 및 작업별 필요 편이장비 현황, 전문가 활용계획, 컨설팅 계획, 사업 참여자 교육 등
- 사업 종료 후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운영규칙 마련 등
- 사업비 집행 계획

4. 기대효과 등

- 유형효과
- 무형효과

※ 참고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선정 심사표(예시)

□ 마을(단체)명 :

항 목	배점	내용	점수	비고	
사업추진 필요성 (40점)	농작업 문제점 (10점)	상(10)	과도한 힘의 사용, 신체 특정부위의 반복사용		1개 이상 해당 필요
		중(8)	부적절한 작업높이, 불편한 작업자세, 피로의 경감		
		하(6)	여유 공간의 확보, 신체압박부위의 해소, 생물학, 화학적 유해요인		
	해당 작업기간 (10점)	장기(10)	7개월 이상		연간 해당기간
		중기(8)	6~3개월		
		단기(6)	2개월 이하		
	해당 농가 (회원)수 (8점)	다(8)	70% 이상		해당 농가(회원)수/ 전체농가(회원)수 ×100
		중(6)	69~50%		
		소(4)	49% 이하		
	해당 농업인 (회원)의 평균연령 (6점)	고년령(6)	65세 이상		참여 농업인 (회원) 연령/ 참여 농업인 (회원) 수
		중고년령(5)	64~55세		
		중년령(4)	54세 이하		
	해당 농작업자 (회원)의 여성 비율 (6점)	다(6)	50% 이상		참여 농업인 (회원) 여성/ 참여 농업인 (회원)수
		중(5)	30~49%		
		소(4)	29% 이하		
사업추진 능력 (30점)	참여비율 (6점)	다(6)	60% 이상		참여 농업인(회원)수/ 전체 농업인(회원) 수×100
		중(4)	40~59%		
		소(2)	39% 이하		
	위원장의 지도력 (6점)	우수(6)	2건 이상		과거 마을(단체) 활동 추진실적
		보통(4)	1건		
		미흡(2)	실적 없음		
	위원회의 추진능력 (6점)	우수(6)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 활동경력이 적절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현황
		보통(4)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이 적절하나 활동경력이 부적절		
		미흡(2)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담, 활동경력이 부적절		
	장비 운영 관리계획의 적절성 (12점)	우수(12)	사업의 추진계획이 적절하며 체계적임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보통(8)	사업의 추진계획은 적절하나 체계적이지 못함		
		미흡(4)	사업의 추진계획이 미흡하며 체계적이지 못함		

항 목		배점	내용	점수	비고
사업의 경제성 (20점)	편이장비의 예상가격 (5점)	저가(5)	99만원 이하		장비의 개당 가격
		중가(4)	100~299만원		
		고가(3)	300만원 이상		
	예상 성능 및 기능 (5점)	우수(5)	70% 이상		해당 문제점의 예상되는 경감 정도
		보통(3)	50~69%		
		미흡(1)	49% 이하		
	이용률 (10점)	고(5)	500시간 이상		연간 농가구(회원) 당 사용시간
		중(3)	200~499시간		
		저(1)	199시간 이하		
사업의 기대효과 (10점)	유형효과 (5점)	상(5)	200시간 이상		연간 편이장비 사용[가구(회원)당 농작업 경감시간×해당 편이장비 사용 가구(회원) 수]
		중(4)	100~199시간		
		하(3)	99시간 이하		
	무형효과 (5점)	상(5)	3개 이상		해당 항목의 수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성 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피로경감, 편이장비의 확산보급홍보, 작업의 개선 중예)
		중(4)	2개		
		하(3)	1개 이하		
합계		100점			
종합의견					

※ 시군 및 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조정

※ 심사자 : 경험 있는 전문 컨설턴트 참여

심사일 : 20 년 월 일

심사자 : 직

성명

(서명)

[제3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계획 보고(3. 20)

1. 일반현황

도별	추진마을 (단체)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2. 농작업 현황

우선순위	대상작목	대상작업	문제점	참여농가 (회원)수
* 5순위까지 작성				

3.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책	연락처	추진분야	비고
					위원장
					위원

4.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5.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내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제4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추진 결과보고(11. 20)

1. 마을(단체)명

도별	추진마을 (단체)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2. 사업참여 가구 및 인구수(마을 또는 단체 중 선택)

(마을)

총가구수(호)			참여 가구수(호)			참여 성별 농업인수(명)			참여 연령별 농업인수(명)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단체)

총회원수(명)			참여 성별 회원수(명)			참여 연령별 회원수(명)			
남	여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3. 사업 추진 결과

○ 위원회 및 전문가 활용, 컨설팅 등 결과

일 자	주요내용	비고

○ 참여자 교육 결과

일 자	장소	인원	주요내용	비고

○ 사업비 집행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계					

○ 편이장비의 보급 및 활용 현황

편이 장비명	수량	가격	사용용도			이용 가능 농가 (회원)수	구입처	
			대상 작목	대상 작업	주 사용 기간 (월)		회사명	연락처

○ 편이장비 운영규칙(별도 첨부)

- 지원한 편이장비의 이용, 파손 및 고장, 망실 등 총괄 관리 운영 규칙 등

4. 사업 추진 성과(편이 장비의 사업추진 전-후에 대한 비교 평가, 컨설팅 결과 활용)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주요내용	비고
사용효과				주지표
편이성				부지표
안전성				"
생산성 등				"

* 편이성 : 장비의 사용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 작업자세와 반복작업 및 무리한 힘의 경감 등 문제점의 개선 정도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 안전성 : 근골격계 질환 등의 농작업성 질환 및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 현황 분석

*** 생산성 : 해당 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량의 변화에 대한 산업공학적 분석

○ 기대효과

- 편이장비 보급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유형, 무형 및 파급 효과 등

○ 관련사진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효과 컨설팅(예시)	
사진	사진
장비 활용 효과 조사(예시)	컨설팅 설문조사(예시)

농작업 편이장비 개선 전·후 보급(예시)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사진

※ 첨부 : 사업추진위원회 및 컨설팅 활용, 편이장비의 사업 전-후 개선 비교 사진 및 현장 활용 사진 등 (사진 사이즈 1M 이상)

5. 우수사례 및 홍보실적

항 목	주요내용	비고
우수사례	편이장비 개발에 농업인 아이디어 반영	예시
홍 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홍보 및 발간	예시

6.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의사항

○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항 목	현황 및 문제점	금후 개선대책(안)

○ 기타 건의사항

4)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 시범

* 이 사업의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생활지도관 최미용, 031-229-5881)입니다

□ 목 적

- 포도 작업의 단순 반복 작업, 무리한 작업자세, 중량물 운반작업 개선으로 인한 근골격계 위험요인 감소로 농업인의 건강 도모
- 포도재배 작업자의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추진방향

- 포도 주산지 중심으로 여성, 고령인력의 인간공학적인 농작업 개선 지원
- 개발 기술 및 연구결과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시범요인 보급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와 피드백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3개소(안산, 화성, 김포)
- 사업비 : 9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국비·지방비각 50%)
 - 시군당 사업대상 농가호수는 시군여건에 맞게 결정하되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최소한 10호 내외로 추진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대상 : 농업인단체, 주산단지, 마을(리)단위
- 선정기준
 - 포도농작업의 노동부담이 크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농가
 - 작목재배 농가 중 작목반 등 조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 주변 농가에 효과를 적극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 시범 : 포도알숙기 작업의자, 전동식 수확운반차, 전동 순치기 장비 개발품 보급

* 예시) 포도 작업개선 장비 예상단가(1농가당 280만원 정도)

- 전동식 포도 수확운반차 : 150만원
- 알슈기 3륜 작업의자(경사, 높이조절) : 25만원×2대=50만원
- 전동순치기 · 가지치기 장비(길이조절 가능) : 80만원

○ 포도작업 개선장비 개발기술 및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교육 등

□ 사업추진 방법

- 포도농작업에 대한 기본현황 및 여건조사, 활용교육, 현장 견학 등 현지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하되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작업시스템 지원
- 작업 시스템 설치 후 주변 포도재배 농가에 효과를 널리 홍보
- 인간공학적 작업자세 개선, 작업능률 향상, 피로감소 효과 등 효과 평가 측정
- 센터의 해당 작목기술 담당지도사와 협력하여 사업 전반 추진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 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지역 확정	—————											
○ 사업계획 수립		—————										
○ 사업 추진				—————									
○ 사업 평가										———	

□ 기대효과

- 포도 알슈기, 수확물 운반 작업, 순치기 작업에서 인력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행정사항

- 포도작업 시스템 개선 사업계획 보고(제1호 서식) : 3. 20
- 포도작업 시스템 개선 사업추진결과 보고(제2호 서식) : 11. 20

[제1호 서식]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계획(3. 20)

1. 일반현황

추진마을 (단체)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참여농가 (회원)수	생산규모		대상작업	문제점
			생산 면적	연간 생산량		

2.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비 고
월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월						

○ 사업비 집행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계					

○ 관련사진 : 포도작업 개선장비 보급 전·후 작업사진

보급 전	보급 후
사진	사진

※ 첨부 : 포도작업 개선장비의 보급 전·후 작업장면 사진 등 (사진 사이즈 1MB 이상)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항 목	현황 및 문제점	금후 개선대책(안)

○ 기타 건의사항

5)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 이 사업의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생활지도관 최미용, 031-229-5881)입니다

□ 목 적

- 부적절한 농작업 자세로 장시간 계속되는 작업을 개선 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향상 및 농업생산성 향상
- 지속적인 농작업 안전교육 실시로 농업인 안전의식 향상 및 건강 증진

□ 추진방향

-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구
-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는 특정한 신체부위의 장시간 반복작업 과중한 중량물 취급과 운반 등의 농작업 환경 조건 개선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
- 농업인의 주도적 참여와 안전보건 의식의 생활화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적합한 농작업보조구 보급으로 농업인 건강증진

□ 2010년 추진계획

- 사업량 : 5개소 (고양, 안산, 파주, 김포, 남양주)
- 사업비 : 150백만원(개소당 30백만원, 도비30, 시군비50, 자부담20%)
 - ※ 개소당 사업비 30백만원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지역 : 시설 및 노지원예, 과수, 축산 등 주산지
 - 선정기준
 -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 사업이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많은 주산지로 농작업의 노동부담 증가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필요로 하는 주산지
 - 참여농가의 주재배 작목 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사업 참여 농업인수가 15명 이상인 주산지
- 사업내용
 - 농작업 안전의식 건강관리 전문교육 및 농작업 위해요인을 절감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
 - (예시)
 - 건강생활반, 근골격계질환 개선반 등 농업인 교육 등
 - 시설설치 :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선별작업장 설치 등
 - 보조구 : 전동운반차, 파종기, 동력분무기, 자바라 콘베이어 등

- 피복장비 : 농작업모, 작업방석, 장갑, 토시, 마스트 등
- 방제보호구 : 방제복, 방독마스크, 보안경, 농약보관함 등 농작업 위해 요인절감을 위한 자체개발 보조구 등
- 사업비 집행시 공동집행분을 제외한 개별농가에 보급하는 보조구장비나 시설은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되도록 하고 농업인 자부담 비율을 정하여 보급하되 지원액이 클수록 농가 자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사업수행시 도단위 농작업 안전사업 자문단과 협의 후 사업비 집행

□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제1호 서식
- 추진계획 제출 : 3. 20(제2호 서식)
- 추진결과 제출 : 11. 30(제3호 서식)

[제2호 서식]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 : 3. 20

마을명 :

사업대표 : (연락처: , 주민번호)

일반현황

주작물	영농규모	농사기간	참여희망 농가수	성별 참여 희망 농업인수	
				남	여

주산지 농작업 위해요인 현황 및 필요 보조구

구 분	개선필요작업	필요보조구	희망농업인수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사업추진계획

시군명	사업추진내용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제3호 서식]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추진결과 : 11. 30

마을명 :

사업대표 : (연락처: , 주민번호)

일반현황

주작물	영농규모	농사기간	참여 농가수	성별 참여 농업인수	
				남	여

사업추진결과

• 보조구 보급

사업추진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보조구 및 시설개선	용도	보급량	구입처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농작업 안전의식 및 건강관리교육

시군명	사업추진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교육과정 운영 후 안전의식 변화도 (50명이상 조사)

교육 과정명	안전의식 향상 (점)		향상도(%)
	교육 전	교육 후	

※ 조사 대상자 평균 점수 기입

※ 설문문항을 작성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실시 전, 후 설문조사 실시 후 변화도 측정 (예시1) 농작업 안전의식 변화도 설문서 참고

보조구 사용 후 효과(사용참여농가 20명 조사)

○ 참여자 사용효과

보조구명	사용후 효과											
	작업자세 개선				피로감소				작업능력 향상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 작업능력 향상 (보급 보조구 중 2개 선별 조사)

보조구명	시간당 작업량 (1시간/kg)		보조구사진
	보조구 사용 전	보조구 사용 후	

○ 농작업 사고 건수 : (최근2년간) _____ 건 → ('08) _____ 건

○ 근골격계질환 변화도 : 사업전 _____ % → 사업후 _____ %

※ 근골격계 질환 조사표 추후 송부

사업 참여자 농업인 의견

- 좋은점
- 앞으로의 보완점

사업 추진성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사업관련사진 : 보조구별 사업전, 후 사진 5매이상 송부

【 예 시 】

농작업 안전의식 변화도 설문서

1. 우리나라에서 농업인의 재해율은 다른 산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어깨, 허리, 무릎등의 관절을 중심으로 뼈, 근육, 신경, 인대 등이 지속적으로 쭈시거나 화끈거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오는 근골격계 질환(일반적으로 골병)을 앓고 있는 사람비율은 농업인이 비농업보다 많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3 농작업을 할때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거나, 서서하는 자세중 척추에 가장 스트레스가 적게 가는 자세는 의자에 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농업인에게 많은 무릎 관절염이나 요통등의 근골격계 질환(일반적으로 골병)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농업인에게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일반적으로 골병)은 개인의 생활습관에 문제로 인하여 나이가 들면 많이 발생하게 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농약 방제복을 세척할 때는 세제를 사용하므로 일반 의복과 함께 세탁해도 괜찮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농약을 살포할 때는 일반 면 마스크를 쓰면 입, 코를 통해 농약이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하우스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는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순환용팬을 작동시켜야 한다.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9.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중 연간 사고 사망자 수가 제일 높은 농기계는 경운기이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 랩토스피라증은 두통, 고열, 오한의 증상이 나타나며 들쥐의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한탄바이러스 등)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발생한다.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